[1호 안건: 십정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운영기관	인천광역시	l 건축계획과		심의일자	2019. 08. 06.			
 건축종별	[([○]신축, []증축, []대수선, []기타						
건축주	성명(법인명) 섭	ы정3구역 주	택재개	발 정비사업조합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대지현황	지번 432번지 일	일대	관련지	번				
	대지면적 27,57	′1.70 m²	용도지'	역(지구, 구역) 제3층	종일반주거지역 			
	건축면적 5,184	. 591 m²	건폐율	£ 18.80 %	층수 지하 : 3층/ 지상 : 36 층			
건축물현황	주용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동수 9 동 (아파트 772세대)			
	최고높이 107.	25m	용적률	를 270.48 %	연면적 합계 123,033.391 m²			
	구 분			주요 심	의결과			
심의내용	(건축계획) 분야	 ○ 일조 시물레이션을 실시하여 각 세대별 충분한 일조 확보 할 것 일조 등 건축내용 확인을 위한 도서 보완 남북 방향에 대한 일조시간 점검 확인 ○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 테마계획을 구체적으로 계획할 것 유아놀이터와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확실한 테마 제시 ○ 109동 1층 주민휴식 및 커뮤니티 공간의 구체적 활용방안 제시 할 것 ○ 조경과 주변경관을 조화롭게 매치하여 지하주차장 천장디자인을 구체적으로 계획할 것 ○ 전체단지 입면 색채계획을 확인 할 수 있는 계획도 및 조감도 제출할 것 ○ 근린생활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입면 계획 보완할 것 						
	(구조)분야	O 구조 3	E치계획	에 대한 상세계획	획 제출 할 것			
심의결과	[] 원안 의결 [] 조건부 의결 [○] 재검토 의결 [] 부결 ※ 작성기준(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3 관련) • 원안 의결 :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 조건부 의결 :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 재검토 의결 :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 부결 :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2호 안건: 인천여상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

운영기관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		심의일자		2019. 08. 06.				
 건축종별	[()] 신축,	[] {	증축,	[]다	 수선, []기타				
건축주	성명(법인명) 인	성명(법인명) 인천여상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사동									
대지현황	지번 23-4		관련지	번						
	대지면적 15,908	3.2 m²	용도지역	역(지구, 구역	^{벾)} 일반	상업지역, 방화지구, 재개발구역				
	건축면적 2,759.		건폐율	17.3442	%	층수 지하 : 3층/ 지상 : 39층				
건축물현황	주용도 공동주택 스텔, 근린생활/		구조 경	철근콘크리	트조	건축물 동수 4 동 (공동주택 579세대,오피스텔88실)				
	최고높이 109.8	35m	용적률	405.434	7%	연면적 합계 91,700.3444㎡				
	구 분			2	주요 심	 의결과				
심의내용	(건축계획)분야	○ 서측 외벽(주차장)이 주변과 어울릴 수 있는 방안 검토 - 101동 도로측 지하층 외벽면에 개구부를 두고 경관 계획할 것 ○ 어린이집,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 입면디자인을 구체화 하여 건물디자인 개선할 것 ○ 지하층 택배보관함 위치에 대해 주민들이 편리한 공간에 재배치 검토 할 것 ○ 모든 계단실 채광창 설치할 것 ○ 각 동의 필로티 하부, 북카페,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디자인 및 계획 수립할 것 ○ 외부공간 청소년 어린이 휴게공간(배드민턴장 축소) 검토할 것 ○ 입면계획에 있어 옥탑높이를 낮게 조정하는 방안 검토할 것 ○ 사전검토 의견 및 조치계획 반영할 것								
	(토목)분야	○ 인천여상 측 비탈면 보호계획 및 흙막이 시설 설계시 굴토 단계 별로 비탈면 안전성 검토 보완 할 것 ○ 굴착단면별로 다음사항 보완할 것 - 단면 C-C E/A 2단계획 - 단면 D-D 인천여상측 비탈면 안정성 확보방안 - 단면 E-E 1단 Raker 경사각 조정 - 단면 F-F 자립식이 아닌 E/A(Raker)보강 및 H-pile 상부는 내부 굴착고 바닥(EL 4.70)까지 설치 - 단면 G-G 자립식이 아닌 E/A(Raker)보강 및 H-pile 상부는 내부 굴착고 바닥(EL 7.60)까지 설치								

		O 흙막이 벽체공법이 H-pile+ps 특수공법으로 건기법 감리와는 별 도로 굴토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설계자가 상주감리 및 자동화 계측관리 시행하여 특수공법 적용의 적정성 및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에 명기할 것
	(구조)분야	O 지반조사와 토질 기술사의 검토를 통해 재검토하여 기초형식을 적절하게 선정할 것
	(소방)분야	O 창호 없는 지상층 계단 코어부분에는 16층 이하에도 소방대의 원활한 통신을 위한 무선통신보조설비(예, 안테나)를 설치하여 음영지역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공통)사항	O 기타 사전검토 의견의 조치계획 및 기관(부서)별 협의 의견은 건축 인·허가(사업계획 승인)시 반영할 것
	[] 원안	의결 [O] 조건부 의결 [] 재검토 의결 [] 부결
심의결과	• 원안 의결 : 성	원 <u>회 심의기준 9.3 관련)</u>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바여하도로 하는 이경

-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 재검토 의결 :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 부결 :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건축위원회 심의기준」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3호 안건: 검단신도시 AB9블록 주택건설사업]

운영기관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		심의일자	2019. 08. 06.				
건축종별	[([○]신축, []증축, []대수선, []기타							
건축주	성명(법인명) 우) 우미건설(주)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대지현황	지번 AB9블록		관련지	번					
	대지면적 31,541	l m²	용도지	역(지구, 구역) 저	3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면적 5,183.		건폐율	£ 16.4532%	층수 지하 : 2층/ 지상 : 29층				
건축물현황	주용도 공동주택 부대복리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동수 8 동 (공동주택 765세대)				
	최고높이 82.85	ōm	용적률	₹ 216.96%	연면적 합계 102,088.4625㎡				
	구 분	구 분 주요 심의결과							
	(건축계획)분야	다자인 - 주민공용 - 거나 때 O 입면 설 할라는 O 내부 보	개선할 동시설5 ·듯한 느 색체계 ^호 한색을 행통로	것 E 단조한 이미? -낌의 소재를 / - 에서 전체적(보완 해주는 !	의 개선이 필요한 바, 변화를 주어 지로 자연소재인 밝은 목재를 사용하 나용하여 디지인을 개선할 것 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되 포인트 검색톤의 색채 배색 검토할 것 단 바닥패턴 등을 통해 연계할 것 반영할 것				
심의내용	(토목)분야	O 흙막이 SCW의 Arch 구조체로서 역할은 응력재(H-pile) 간격에 의해 정해지므로 공법의 Arch 지보재 간격을 1.35M에서 90cm로 변경 적용할 것 O 오픈컷 구간의 변곡부는 굴토시 비탈면 안전성 확보에 불리하므로 직선화 처리할 것(1-26-68구간)							
	(구조)분야	 O 904동, 905동의 지반에 대한 추가적인 탄성파시험결과를 제출하고 내진설계 범주를 재확인 할 것 O 903동은 필로티가 있는 부분의 수직벽체는 최대하 전이를 줄여 SPAN을 최소화하고 현재 건축도면보다 전이가 많이 발생하였는 데 내진안전을 위해서는 건축도면에서부터 최소화 필요 							

	(공통)사항	O 기타 사전검토 의견의 조치계획 및 기관(부서)별 협의 의견은 건축 인·허가(사업계획 승인)시 반영할 것
심의결과	• 원안 의결 : 성 • 조건부 의결 : • 재검토 의결 : • 부결 : 상정안	의결 [O] 조건부 의결 [] 재검토 의결 [] 부결 원회 심의기준 9.3 관련) 당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축위원회 심의기준」 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4호 안건: 주안1구역 주택건설사업(구조심의)]

운영기관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고	ŀ	심의일기	47		2019. 08. 06.		
건축종별	[()] 신축,	[]	증축, [] 대	수선,	[]기타		
건축주 	성명(법인명) 주안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대지현황	지번 1452-52번	디 일원	관련지	번					
	대지면적 105,99	94 . 50 m²	용도지역	역(지구, 구역		등 일반주거: 종 지구단위	지역, 재정비촉진지구, 계획구역		
	건축면적 16,239) . 90 m²	건폐율	건폐율 15.32%		층수 7	지하 : 3층/ 지상 : 40층		
건축물현황	주용도 공동주택 복리시설	백 및 부대	구조 :	철근콘크리!	트조		동수 22 동 ^E 택2,958세대)		
	최고높이 115.1	5m	용적률	258.55%		연면적	합계 413,955.05 m²		
	구 분			주	- 요 심	의결과			
	(구조)분야	○ 코어다이어프램 강화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계획을 제시할 것 ○ 사전검토 의견 및 조치계획 반영할 것							
심의내용 (토목)분야 ○ 단면C가 포함된 40m도로측, 단면B가 포함된 33m도로를 구간을 직선화 시켜 흙막이 시설 및 굴토 단면의 안전할 것 ○ 단면D는 급경사지를 포함한 비탈면 안전성 검토할 것						토 단면의 안전성을 확보			
	(공통)사항	O 사전검토 의견 및 조치계획은 착공 때 반영할 것							
심의결과	[] 원안 의결 [O] 조건부 의결 [] 재검토 의결 [] 부결 ※ 작성기준(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3 관련) • 원안 의결 :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 조건부 의결 :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 재검토 의결 :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 부결 :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건축위원회 심의기준」 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5호 안건: 간석초교주변 다복마을 재개발정비사업(구조심의)]

운영기관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고	ŀ	심의일자		2019. 08. 06.		
 건축종별	[○]신축, []증축, []대수선, []기타							
건축주	성명(법인명) 간석초교주변다복마을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대지현황	지번 70-16번지	일원	관련지	번				
	대지면적 55,705	5.40 m²	용도지역	용도지역(지구, 구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면적 7,139.	. 2727 m²	건폐율	16.7	0%	층수 지하 : 3층/ 지상 : 35층		
건축물현황	주용도 공동주택 부대복리/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동수 11동 (공동주택 1,115세대)		
	최고높이 99.15m		용적률	! 236.	55%	연면적 합계 151,990.56m²		
	구 분				주요 심	의결과		
심의내용	(구조)분야	O 슬래브 고 추가 O 협의대성 대책 수	O 구조계산서 및 구조도면 미비한 바, 전동에 대하여 작성할 것 O 슬래브 다이어프램 검토에 대한 상세한 해석자료를 보완 제출하 고 추가 보강부재의 설계를 고려할 것 O 협의대상지의 기반시설이 단절되지 않도록 설계 단계부터 면밀한 대책 수립할 것 O 사전검토 의견 및 조치계획 반영할 것					
	(토목)분야	 ○ 착공전 옹벽 정밀안전진단 시행하여 굴토에 따른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도서에 반영할 것 ○ 굴토에 따른 도로하부의 지장물 보호를 위해 GPR 탐사를 반드시시행하여 기 조사된 지장물 확인 과정을 통한 지장물 현황을 정확히 설계도서에 반영할 것 						
심의결과	[] 원안 의결 [] 조건부 의결 [O] 재검토 의결 [] 부결 ※ 작성기준(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3 관련) • 원안 의결 :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 조건부 의결 :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 재검토 의결 :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 부결 :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건축위원회 심의기준」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6호 안건: 루원시티 주상5,6블록 주상복합(구조심의)]

운영기관 	인천광역시 건	<u></u> 축계획괴	-	심의임	일자	2019. 08. 06.			
 건축종별	[0]	[] {	 5축,	[]다	수선, []기타				
건축주	성명(법인) 디에스네트웍스(주)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대지현황	지번 주상5,6블록	관련지번							
	대지면적 52,663.36	6 m²	용도지역(지구, 구역) 일반상업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건축면적 13,862.16	618 m²	건폐율	26.32%	6	층수 지하 : 4층/ 지상 : 47층			
건축물현황	주용도 공동주택,오 근린생활시ረ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동수 14동 (공동주택 1,789세대,오피스텔529실)			
	최고높이 140.5m		용적률	435.59	9%	연면적 합계 359,211.9491 m²			
	구 분				주요 심	의결과			
심의내용	│ (구조)분야 │	O 주요 전이층은 2D로도 해석하여 안전성 확보할 것 O 사전검토 의견 및 조치계획 반영할 것							
	(공통)사항 O	O 사전검토 의견 및 조치계획은 착공 때 반영할 것							
심의결과	* 작성기준(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3 관련) • 원안 의결 :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 조건부 의결 :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 조건부 의결 :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 재검토 의결 :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 부결 :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건축위원회 심의기준」 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7호 안건: 루원시티 주상4블록 주상복합(구조심의)]

운영기관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		심의일자	2019. 08. 06.				
 건축종별	[○]신축, []			 증축, [][내수선, []기타				
건축주	성명(법인) 디에스종합건설(주)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대지현황	지번 주상4블록		관련지	번					
	대지면적 31,363	3 m²	용도지역	용도지역(지구, 구역) 일반상업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건축면적 10,544	1.6927 m²	건폐율	33.6192%	층수 지하 : 5층/ 지상 : 49층				
건축물현황	주용도 공동주택 근린생활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동수 6동 (공동주 택 1,059세대, 오피스테120실)				
	최고높이 154.54	4 m	용적률	439.8479%	연면적 합계 198,631.0028 m²				
	구 분			주요 1	심의결과				
심의내용	○ 전이보 스팬이 과도함. 특히, 49층의 경우 수직부재를 저층에서 연약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 할 것 ○ 슬래브 다이어프램 검토에 대한 상세한 해석 내용을 제출 ○ 필로티층과 상부층의 강성 차이가 구조기준에서 정한 값 되도록 기둥의 단면을 키울 것 ○ 103동의 경우 49층인데 전이가 많이 되므로 전이 기둥긴 줄이는 방법을 확보할 것 ○ 사전검토 의견 및 조치계획 반영할 것								
	(공통)사항 Ο 사전검토 의견 및 조치계획은 착공 때 반영할 것								
	[] 원안	의결 [(0] 조	건부 의결 [] 재검토 의결 [] 부결				
심의결과	 ** 작성기준(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3 관련) • 원안 의결 :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 조건부 의결 :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 재검토 의결 :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 부결 :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단,「건축위원회 심의기준」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